

## IV-10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추진부서 (사업주체)	인재양성과 (고창군)	팀장	신순옥 (2835)	담당자	박효정 (2937)	추진율	전체대비 0%	23년대비 0%
----------------	----------------	----	---------------	-----	---------------	-----	------------	-------------

구 분		연도별 목표	세부 추진실적
2022	4분기	◦ 보건복지부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2023	1분기	◦ 보건복지부 협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활동 - 협의기준 및 협의절차 문의, 우리군 타당성 및 사업계획 설명 등
	2분기	◦ 보건복지부 협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검토결과(재협의)에 대한 의견 제출 - 회신의견 : 불수용(제도조정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
		◦ 조례 제정	
	3분기	◦ 추경예산 확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결과 송부 -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부정적 영향으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4분기	◦ 1,375명 (100%)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검토결과(재협의)에 대한 의견 제출 -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협의 불가 의견으로 협의종료	
2024		◦ 1,375명 (100%)	
2025		◦ 1,375명 (100%)	
2026		◦ 1,375명 (100%)	

### 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공약 변경 추진)
- 총사업비 : 330백만원(군비) ※ 매년 가입 및 갱신( '23년은 추경)  
- 연간 사업비 : 82.5백만원(1인 60,000원)
- 가입대상 : 고창군 거주 0세~만 6세 이하 취학전 아동
- 가입인원 : 1,375명

(2022. 10월말 기준)

합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1,375	135	157	181	213	207	240	242

- 보장내용 : 상해 후유장애 등 영유아 대상 상해보험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 사업비	예산확보 계획					예산확보 실적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총액	330			330						
기투자										
2023	82.5			82.5						
2024	82.5			82.5						
2025	82.5			82.5						
2026	82.5			82.5						
임기 후										

II 지금까지 추진상황

- 타 지자체 및 보험사 등 상해보험 가입절차 등 파악..... 2022. 1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22. 11.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활동 ..... 2023. 1. ~ 12.
  - 협의기준 및 협의절차 문의, 우리군 타당성 및 사업계획 설명 등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결과 송부 ..... 2023. 5. 17
  - 검토결과 : 재협의(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필요)
  - 검토내용 : 협의기준 및 그간 협의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협의 결정
  -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시행 및 민간보험 가입 지원은 과잉의료 이용 유발 등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부정적 영향으로 사업추진 재검토 필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검토결과(재협의)에 대한 의견 제출... 2023. 5. 30.
  - 회신의견 : 불수용\*(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수용이 어려운 경우)
  - \* 불수용 의견 제출 시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결과 송부 ..... 2023. 10. 26.
  - 검토결과 : 재협의
  - 검토내용 :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부정적 영향으로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검토결과(재협의)에 대한 의견 제출... 2023. 12. 4.
  - 회신의견 : 사업미추진
  -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재협의 불가 의견으로 협의종료

### Ⅲ 문제점 및 대책

-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협의 통보됨에 따라 공약사업 대체 사업 추진 필요

### Ⅳ 향후 추진계획

-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은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임
- 차후 공약사업 변경 절차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참고** 추진실적 증빙자료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협의결과 회신 공문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보장총장직무대행)  
(관유)  
제목 고창군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보장사업 협의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장과-727(2023.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사업 신설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협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검토결과 의견 1부. 끝.

고창군수

인직장성희  
주무관 **김민정** / 아동보육팀장 **신승욱** / 민생지원과장 **이길수**  
주소지  
소재지 **민생지원과-36145** / 읍소  
우 58447 / 전라북도 고창군 중앙로 245, 고창군청 / www.gochang.go.kr  
전화번호 063-560-2937 / 팩스번호 063-560-2898 / min80@korea.kr / 비공개(0)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넘치는 고창"  
문서관리카드번호: 영유아-36145 / 1/1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협의결과 회신 공문

【서식 4】 회신 양식 (협의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신설)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전북 고창군)**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23. ~ (계속추진)</li> <li>○ 총사업비 : 330백만원(국비 330), 읍·면·군 가립 및 갭신</li> <li>- 연건 사업비 : 62.5백만원(1인 60,000원)</li> <li>○ 가입대상 : 고창군 거주 만 0~6세 이하 취학 전 아동</li> <li>○ 가입인원 : 1,375명</li> <li>○ 보장내용(인) : 상해 후유장애 등 영유아 대상 상해보험 9종</li> </ul>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사업미추진
복지부 검토이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세입의'</li> <li>- 민선 8기 공약사업이라는 것임으로, 세입의 결과에 대한 불수를 피하러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부정부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b>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b></li> <li>* (세입의 결과통보, '23.5.17.) 국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6월) 등이 시행되고 있고, 연건보험 가입 제한은 과잉의료 이용 유발 등 국가 의료보장체계(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제도)에 부정부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li> </ul>
협의요청기관 회신이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연건보험가입 지원은 과잉의료 이용 유발 등 국가의료보장 체계에 부정부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b>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결과에 대한 회신은 사업 미추진</b>으로 제출함</li> </ul>

사업 미추진에 따른 공약 대체사업 보고



계정 : 예산외 / 인계영양과 (2024-01-26 12:14:00)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함께 넘치는 **고창**

발주번호	민생지원과-35214	발주목적	민생지원과	부과수	군수
등록일자	2023. 11. 28.	발주금액	미입수	발주일자	2023. 11. 28.
계약일자	2023. 11. 28.	발주금액	미입수	발주일자	2023. 11. 28.
계약대부	비공개(6)	발주금액	미입수	발주일자	2023. 11. 28.

합 조

기획예산실장 이길수  
기획팀장 신승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관련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협의 보고**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아동보육팀)

사업 미추진에 따른 공약 대체사업 보고

【붙임 2】

계정 : 예산외 / 인계영양과 (2024-01-26 12:14:00)

**다자녀 가정(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추진연황**

구분	사업명	내용
2019. 10. 10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지원대상 : 기준일 부 또는 모 및 자녀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15세 아동중 셋째아 이상 지원금액 : 30천원~50천원(분기1회(연4회)) 대상자 : 556명정도 총예산액 : 200백만원(군비) 지원유형 : 현금
2019. 10. 29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연경)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2020년 1월 1일 기준일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 및 자녀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 -만7세~15세미만으로 양육수당을 받지 않은 자(자녀 기준으로 중복지원 가능) -양육기준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가정 (자녀 기준으로 중복 지원 가능) 대상자 : 556명 지원금액 : 매월 3만원 분기로 지급 총예산액 : 200백만원(군비) 지원유형 : 현금
2020. 1. 6	고창군 신설연경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 (협의완료)	다자녀 가정의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 인정
2020. 6. 8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제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여 고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로서 만7세이상에서 만15세 이하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동거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학교생활을 위해 가족사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2023. 8. 1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 조례(개정)	만7세이상에서 만15세 ~ 7세이상에서 15세